#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35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노종면·조인철·소병훈

박 정・손명수・복기왕

박상혁 • 윤종군 • 문금주

정진욱 • 허종식 • 이훈기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·점포·창고·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,2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. 그러나, 아직까지도 현행법령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,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, 화재 및 붕괴・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. 또한, 현재 교각 밑에설치된 대부분 시설물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고가도로 교각은 소음·방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, 도시 단절을 크게 야기하는 만큼, 교각 밑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,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·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,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,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한다면, 우선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).

#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려는 시설에서 화재·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,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안전사고·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·문화시설·공공시설 등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확인기간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가도로 노면 밑에 제7항에 따른 주민편 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2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고가도로 노면 밑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를 받은 자는 화재·붕괴를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

-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⑧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화재·붕괴 및 범죄발생 가능성,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⑨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화재·붕괴 및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거 나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제63조제1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2의3. 제62조제7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의4. 제62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
제99조제1항 중 "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"를 "따른 처분(제62조제9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제한으로"로 한다.

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2. 제62조제7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
- 6의3. 제62조제9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①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

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6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~	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~
⑤ (생 략)	
<u>&lt;신 설&gt;</u>	⑥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
	려는 시설에서 화재・붕괴 등
	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
	가 높거나, 도시미관을 현저히
	저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
	른 점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
	된다. 이 경우 안전사고 · 범죄
	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 및
	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
	시설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⑦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
	면 밑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
	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・문
	화시설・공공시설 등 인접지역
	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
	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
	한다. 확인기간, 방법 등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 정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가

제62조(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 제62조(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 리 등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도로 노면 밑에 제7항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 로관리청은 이에 따라야 한다. 리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고가도로 노면 밑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화재・붕괴 를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저해 하지 아니하기 위한 대책을 마 런하여야 한다.

⑧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를 받아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화재・ 붕괴 및 범죄발생 가능성, 도시 미관 저해 여부 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⑨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화 재・붕괴 및 범죄발생 가능성 이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한 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63조(도로점용허가의 취소) ① 제63조(도로점용허가의 취소) ①

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~ 2의2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3. •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9조(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) ① 이 법에 <u>따른 처분이</u> 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 은 국가가 보상하고,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 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 다.

② ~ ④ (생 략)법률 제20294호 도로법일부개정법률제117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2의3. 제62조제7항에 따른 대책
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의4. 제62조제9항에 따른 시정
명령을 위반한 경우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99조(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
보상) ①따른 처분(제
62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
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제한
으로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294호 도로법
일부개정법률
제117자(교대교) ① (청해고 가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7. · 8. (생략) ③ ~ ⑥ (생략)

$\frac{\Diamond}{\Box}$ )
②
·.
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6</u> 의2. 제62조제7항에 따른 대책
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
<u>6</u> 의3. 제62조제9항에 따른 도로
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
<u>자</u>
7.・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현행과 같음)